

#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1
----------	-----

제출년월일 1999년 12월 일  
제 출 자 평 창 군 수

## 1. 개정이유

'99. 3. 12 주차장법 개정으로 종전의 노외주차장설치의 신고제를 통보제로 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하는 자는 군수에게 통보만 함으로서 주차장설치의 효율성 제고
- 근린공공(변전소, 양수장, 정수장등)시설, 종교시설(수도원, 수녀원 제실 및 사당), 동물관련시설중 축사, 식물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중 송수신 시설 및 중계시설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신설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음.
-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 및 폐지신고를 삭제하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요금을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는 상위법에 폐지된 것이므로 이를 준용하여 폐지 함.

## 3. 참고자료

- 관계법령 : 별첨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입법예고 : 별첨

##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법제7조제1항 및 법제12조 제1항 또는 법제27조"를 "법제7조제1항"으로, "법제12조제2항"을 "법제12조"로 한다.

제7조 제목 "(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를 "(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의 허가 또는, 군수에게 신고후에 설치하여야 하며"를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하는 자는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제목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부설 주차장의 설치)"로 하고, 동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준농림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전체로 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5조의2 제목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을 삭제한다

제15조의4를 삭제한다

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6(막다른 도로등에 있어서의 출입구의 너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제4호 단서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이 막다른 도로와 접하여 있는경우에는 그 출입구의 너비를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7(부설주차장설치 의무면제)법 제19조제5항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설치 부지와 접하여 있는 도로가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등 법률상의 제한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장소
2. 시설물의 설치 부지가 고산지대 또는 계단형 지대에 위치하는 등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장소
3.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장소
  - 가. 도시계획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로써 개설된 도로의 너비가 15미터 이상인 도로
  - 나.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물이 밀집된 도심지를 통과하는 도로로써 그 너비가 6미터 이하인 도로(단,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제3항중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를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한다.

**【별표5】** 숙박시설의 시설물중 “ 기타” 를 삭제하고, 설치기준란중 “2객실당1대+부대운동시설별 산정대수 +기타 부대시설 면적 40㎡당 1대” 을 “ 시설면적 200㎡당 1대” 으로 하고 “ 시설면적 150㎡당 1대” 은 삭제하고 의료시설의 시설물중 “ 종합병원, 기타” 을 “ 병원(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장례식장” 으로하고 설치기준란중 “ 3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120㎡당 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 를 “ 시설면적 150㎡당 1대” 로 하고 “ 시설면적 150㎡당 1대” 는 삭제하며, 음식점시설의 설치기준란중 시설면적 “ 50㎡” 를 “ 150㎡” 로 하고, 판매시설의 시설물중 “ 기타” 를 삭제하고, 설치기준 “ 시설면적 80㎡” 을 “ 시설면적150㎡당 1대” 로 하며, “ 시설면적 100㎡당 1대” 는 삭제하고, 위락시설의 시설물중 “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위락시설을 제외한다), 유흥음식점,기타” 를 삭제하고, 설치기준 중 “ 시설면적 50㎡당 1대” 를 “ 시설면적 100㎡당 1대” 로 하고 “ 시설면적 100㎡당 1대” 를 삭제하며, 업무시설, 종교시설의 설치기준 중 “ 시설면적 100㎡당 1대” 를 “ 시설면적 150㎡당 1대” 로 하고 동표 시설물란 중 “전시시설, 운수시설, 방송·통신시설, 창고시설 (냉동·냉장창고를 제외한다)”를 “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 로 하고, 근린생활시설 시설물 중 “ 근린생활시설” 을 “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로 하고, 단독주택의 시설물중 “ 단독주택” 을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으로 하고, 설치기준중 “ 건축연면적 130㎡초과 200㎡이하는 1대, 건축연면적 200㎡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를 “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는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 로 하고, 동표 비고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1호”를 “제2호”로하고, 제3호중 부설주차장“ (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를 삽입하며, 제4호중 “두자리까지의”를 “첫째자리까지의”로, “면적이 130제곱미터이하이고 전체 시설물의 면적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하고, 제6호중 “산정된 주차대수중 소숫점 이하의 끝수는”을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 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

우에는"으로 하고,“ 다만,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로 하고 제8호중,“숙박시설 중 기타 부대시설이라 함은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식당카페일바·다실·연회실·휴게실 및 위락시설을 말한다”를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로 하고, 제10호중“ 장애인복지법제30조제1항”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 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근린공공시설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공공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종교시설중 수도원, 수녀원, 제실 및 사당
- 다. 동물관련 시설중 축사
- 라. 식물관련 시설
- 마. 방송, 통신시설중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

**【별표6】** 숙박시설의 시설물중 “ 기타” 를 삭제하고, 설치기준란중 “2객실당1대+부대운동시설별 산정대수 +기타 부대시설 면적 40㎡당 1대” 를 “ 시설면적 150㎡당 1대” 로 하고, “ 시설면적 200㎡당 1대” 는 삭제하며 의료시설의 시설물중“ 종합병원, 기타” 을 “ 병원(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장례식장” 으로하고 설치기준란중 “ 3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120㎡당 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 를 “ 시설면적 200㎡당 1대” 로 하며 “ 시설면적 200㎡당 1대” 삭제하고, 예식장시설의 설치기준란중 시설면적“ 67㎡당 1대” 를“ 150㎡당 1대” 로 하고, 판매시설의 시설물중 “ 기타” 를 삭제하고, 설치기준 “ 시설면적 107㎡당 1대” 을 “ 시설면적 150㎡당 1대” 로 하며, “ 시설면적 133㎡당 1대” 는 삭제하고, 위락시설의 시설물중 “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위락시설을 제외한다), 유흥음식점, 기타" 를 삭제하고, 설치기준중 " 시설면적 67㎡당 1대" 를 삭제하고, 업무시설, 종교시설의 설치기준중 " 시설면적 133㎡당 1대" " 시설면적 150㎡당 1대" 로하고 동표 시설물란 중 " 전시시설, 운수시설, 방송·통신시설, 창고시설 (냉동·냉장창고를 제외한다)"를 "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 로 하고, 근린생활시설중 시설물 " 근린생활시설" 을 "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로 하고, 단독주택의 시설물중 " 단독주택" 을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으로 하고, 설치기준중 " 건물면적 173㎡초과 267㎡이하는 1대, 건축연면적 267㎡초과의 경우는 1대에 267㎡를 초과하는 173㎡당 1대를 더한 대수(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를 " 시설면적 173㎡초과 267㎡이하는 1대, 시설면적 267㎡초과의 경우는 1대에 267㎡를 초과하는 173㎡당 1대를 더한 대수" 로 하고, 동표 비고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1호"를 "제2호"로하고, 제3호중 부설주차장" (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를 삽입하며, 제4호중 "두자리까지의"를 "첫째자리까지의"로, "면적이 173제곱미터이하이고 전체 시설물의 면적이 17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면적이 17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하고, 제6호중 "산정된 주차대수중 소숫점 이하의 끝수는"을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 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으로 하고, "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로 하고 제8호중 "숙박시설 중 기타 부대시설이라 함은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식당각테일바·다실·연회실·휴게실 및 위락시설을 말한다"를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로 하고, 제10호중 " 장애인복지법제30조제1항" 을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 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 근린공공시설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공공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중 수도원, 수녀원, 제실 및 사당

다. 동물관련 시설중 축사

라. 식물관련 시설

마. 방송, 통신시설중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을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p> <p>②~④(생략)</p>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법 제7조 제1항</p> <p>.....</p> <p>....., 법 제12조 .....</p> <p>.....</p>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법 제7조 제1항</p> <p>.....</p> <p>....., 법 제12조 .....</p> <p>.....</p>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법 제7조 제1항</p> <p>.....</p> <p>....., 법 제12조 .....</p> <p>.....</p>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법 제7조 제1항</p> <p>.....</p> <p>....., 법 제12조 .....</p> <p>.....</p>
<p>제7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p> <p>① 생략</p> <p>②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의 허가 또는 군수에게 신고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하는 자는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p>	<p>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하는 자는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p>	<p>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하는 자는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p>	<p>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하는 자는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p>
<p>제12조(주차장 설치심의등)법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p> <p>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현황</p> <p>2.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 영향</p> <p>3.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p>	<p>제12조(삭제)</p>	<p>제12조(삭제)</p>	<p>제12조(삭제)</p>	<p>제12조(삭제)</p>
<p>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p> <p>①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5와 같다.</p> <p>② 영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안에서 설치하여야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6과 같다.</p>	<p>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①시행령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②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준농림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전체로 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6과 같다.</p>	<p>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①시행령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②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준농림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전체로 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6과 같다.</p>	<p>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①시행령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②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준농림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전체로 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6과 같다.</p>	<p>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①시행령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②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준농림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전체로 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6과 같다.</p>

현행	개정안
<p>제15조의2(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법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법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설치된 주차장과 부지내의 공지로써 주차대수규모가 5대이상이어야 한다.</p> <p>②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시간과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p>	<p>제15조의2(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①(삭제)</p> <p>②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당해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p>
<p>제15조의3(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①법제1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설치자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주차시설 배치도(축적 600분의1 이상일것)</p> <p>2. 반경100미터 이내의 유·출입 동선처리도면(축적 600분의 1 이상일것)</p> <p>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제15조의3(삭제)</p>
<p>제15조의4(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폐지신고)①제1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 후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반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하는 날의 14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5조의4(삭제)</p>

현행	개정안
<p>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증지·폐지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15조의6(막다른 도로등에 있어서의 출입구의 너비)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4호 단서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이 막다른 도로와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입구의 너비를 2.5미터 이상으로 한다.</p>
<p>(신설)</p>	<p>제15조의7(부설주차장설치 의무면제)법 제19조 제5항 및 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물의 설치부지와 접하여 있는 도로가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금지구역에 해당하는 등 법률상의 제한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장소</li> <li>2. 시설물의 설치부지가 고산지대 또는 계단형 지대에 위치하는 등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장소</li> <li>3.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도시계획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로써 개설된 도로의 너비가 15미터이상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물이 밀집된 도심지를 통과하는 도로로써 그 너비가 6미터이하인 도로 (단,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li> </ul> </li> </ul> </li> </ol>



현행	개정안
<p>【별표5】 숙박시설의 시설물중 기타 설치기준중 2객실당1대+ 부대운동시설 별 산정대수+ 기타 부대시설 면적 40㎡당 1대, 시설면적 150㎡당 1대 의료시설의 시설물중 종합병원, 기타</p> <p>.....</p> <p>설치기준중 3병상당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120㎡당1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p> <p>예식장시설의 설치기준중 시설면적 50㎡당 1대, 판매시설의 시설물중 기타, 설치기준 시설면적 80㎡당 1대, 시설면적100㎡당 1대, 위탁시설의 시설물중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위탁시설을 제외한다),</p> <p>위탁시설의 시설물중 유흥음식점, 기타, 설치기준중 시설면적 50㎡당 1대, 업무시설, 종교시설물 설치기준중 시설면적 100㎡당 1대</p> <p>전시시설, 운수시설, 방송·통신시설, 창고시설(냉동·냉장창고를 제외한다)</p> <p>근린생활시설 시설물중 근린생활시설</p> <p>.....</p> <p>단독주택의 시설물중 단독주택, 설치기준중 건물면적 130㎡초과 200㎡이하는 1대, 건축연면적 200㎡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 더한 대수(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p>	<p>【별표5】 .....</p> <p>·시설면적 200㎡당 1대.....</p> <p>.....</p> <p>.....</p> <p>병원(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장례식장</p> <p>.....시설면적 150㎡당 1대.....</p> <p>.....</p> <p>.....150㎡</p> <p>.....150㎡.....</p> <p>.....</p> <p>..... 100㎡당 1대.....</p> <p>.....</p> <p>·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 .....</p> <p>.....</p> <p>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p> <p>단독주택, 다세대주택.....</p> <p>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는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p> <p>.....</p> <p>.....</p>

현행	개정안
<p>동표 비고 (신설)</p> <p>1. (생략)</p> <p>2.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p> <p>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p>	<p>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가. 근린공공시설중 변전소,양수장, 정수장,공공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p> <p>나. 종교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및 사당</p> <p>다. 동물관련시설중 축사</p> <p>라. 식물관련 시설</p> <p>마. 방송,통신시설중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p> <p>2. (현행과 같음)</p> <p>2. (삭제)</p> <p>3. ....부설주차장 (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p>





현행	개정안
<p>동표 비교 (신설)</p> <p>1. (생략)</p> <p>2.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p> <p>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인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p>	<p>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근린공공시설중 변전소,양수장, 정수장,공공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및사당 다. 동물관련시설중 축사 라. 식물관련 시설 마. 방송,통신시설중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p> <p>2. (현행과 같음)</p> <p>2. (삭제)</p> <p>3. ....부설주차장 (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p>



현행	개정안
<p>【별지 제4호서식】 부설주차장 일반이 용신고서</p> <p>【별지 제5호서식】 부설주차장 일반이 용폐지(중지) 신고서</p>	<p>【별지 제4호서식】 (삭제)</p> <p>【별지 제5호서식】 (삭제)</p>

" Happy700 평창입니다 "

# 평 창 군

우 232-800/ 강원·평창·평창읍 하리 210-2/ 전화(0374)330-2245/FAX330-2630  
☆ 처리부서 : 종합민원실 실장 김일래, 담당 : 여운기, 담당자 : 김영옥

문서번호 민원 91158 - 667  
시행일자 1999. 12. 16  
(공개여부)

발음 내부 결재  
참조

보존기간		군	수
공개여부		16 회	
부군수			
실 장	전결	운수담당 여운기	
기안자			
심사자	2/10/99	심사일	99. 12. 16

제목 : 조례안 입법예고 실시 결과 보고

군보제124호로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음을 보고합니다. 끝.

# 평 창 군 수

## 관계법령 발췌(주차장법)

### ( 법 )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등)①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①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이하“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구역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설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갈음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동법 시행령 )

제8조(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등)①법제19조제5항과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장소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 (동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④항4호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